

1. 의결주문

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경비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
나.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

다. 이 영 시행 전에 순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.

③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망급여금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
순직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
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급여금의 청구)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(생략)	제6조(급여금의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 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.</u> <u>③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.</u> <u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교정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805